



2007년도 주요 검사법령 제·개정(II)

1. 선박구획기준 개정[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24호('07.4.6.)]
 - 고정식 가압수분무장치가 설치된 격벽갑판하에서의 배수 및 드레인 시설 요건 신설
 - 드레인 시설의 용량은 물분무 배출장치용량과 소화호스 노즐용량을 합한 양의 125% 이상이고 밀지웰은 충분한 저장용량을 가지는 것일 것
2. 선박방화구조기준 개정[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24호('07.4.6, 7.11.)]
 - 방열 시공된 격벽 또는 갑판이 교차되는 곳 및 말단부의 처리방법을 명확히 함
 - 별표7(신설)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말단부 등 처리
 - 폐쇄장치를 설치하고 흡기 또는 배기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개구를 가지는 제어장소 등의 통풍 장치 기준을 정함
 - 방어댐퍼 또는 기타 폐쇄장치를 설치 할 것
 - 겸용선의 갑판하방에 있는 화물 유관의 설치 위치 신설
 - 화물용 워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워탱크 내부에 설치
 - 방화성능의 요건 및 시험절차 신설
 - 이 기준에 따른 각종 방화성능의 요건 및 시험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제해사기구의 화재시험절차의 적용을 위한 국제코드(FTP Code)를 적용
 - 선박방화구조기준을 모든 신조 여객선 및 화물페리선으로 확대
 - 적용제외 선박 삭제(모든 신조 여객선 및 화물페리에 대하여 확대 적용)
 - 선체재료의 사용제한 완화
 -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득하여 여객운송에 종사하는 여객선 외의 여객선에 대해서는 선체 등의 재료는 강제외의 재료 사용 가능
3. 선박기관기준 개정[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24,126호('07.4.6, 11.22.)]
 - 산적화물선 및 단일화물창의 화물선에 설치되는 침수경보장치 성능 기준 신설
 - 축의 부식방지를 위한 피복으로 고무피복 외에 합성수지피복도 인정
4.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[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24,127호('07.4.6, 11.22.)]
 - 증기공급용보일러에 의하여 생산된 증기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가스소화장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
 - 중팽창 포말의 범위를 명확히 함
 - 중팽창포말이란 팽창률이 50배로부터 150배까지의 범위의 것을 말함
 - 무인기관실 용어의 정의 수정
 - 원격제어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는 ⇒ 기관실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정되는
 - 투척용소화기 신설에 따른 소화제의 용량 및 수압시험 제외 조항 신설